

제277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회의록
(부록)

목 차

- 제277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발의의안.....2면
- 제277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안 검토보고서.....46면

제277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 5 차 본 회 의 제 출 의 안

〈 의 안 목 록 〉	〈 제 출 자 〉
1. 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2. 성주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성 주 군 수】
3. 성주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4. 성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성 주 군 수】



성 주 군 의 회

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3년 11월 일
제출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위임 사항 등을 정비하고,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성주사랑상품권의 원활한 유통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목적 법적근거 삽입 및 법령에 따른 관련 용어 정비 (안 제1조 외 다수)
- 나. 가맹점 등록 제한의 포괄적 예외규정 추가 (안 제5조제2항제3호)
 - “그 밖에 군수가 ~ 경제활성화에 등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 상품권 정책추진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포괄적 규정 추가
- 다. 가맹점 등록 취소에 관한 법령 개정사항 반영 (안 제6조제5항)
 - 가맹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가맹점의 재등록 제한 규정 반영
- 라. 상품권 할인구매 한도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제2항)
 - 월 50만원, 연간 600만원 ⇒ 월 70만원, 연간한도액 삭제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지침 개정사항 반영
- 마. 상품권 판매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제3항)
 - 판매 및 환전금액의 1,000분의 5 범위 ⇒ 삭제
 - 상품권 판매대행 수수료의 최대한도를 삭제하여 탄력적 운용 기대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1) 입법예고 : 2023. 9. 1. ~ 9. 21.(20일간)
 -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기획예산실-9465(2023.8.14.)]
 - 3)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없음 [가족지원과-37833(2023.8.9.)]
 -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주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금융기관을”을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로 한다.

1. “성주사랑 상품권”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제3항 중 “상품권”을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으로, “성주군 금고 등 관내 금융기관에 대행하게”를 “대행하게”로 한다.

제5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공동체발전과 경제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제2조제3호”를 “제2조제2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2조제3호”를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경우”를 “경우 가맹점의 환전한도 초과 신청 및”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본문 중 “경우에는 매월 50만원, 연간 600만 원”을 “경우, 월 구매한도는 7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판매 및 환전금액의 1000분의 5범위에서 판매대행점”을 “판매대행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조제3호”를 “제2조제2호”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20조 중 “「민법」 및 「상법」의 규정”을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별지 제14호서식]

성주사랑상품권 가맹점 환전한도 초과 신청서			
□ 신청인 인적사항			
상 호		사 업 형 태	사업자(□ 개인, □ 법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사 업 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 (휴대폰 :)	
사 업 소 소재지			
주 소			
□ 한도 초과 요청			
상품권 환전요청액(최대 3,000만원)			만원
월평균 매출액(*소득금액 증빙 가능한 직전 분기)			만원
□ 한도 초과 사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가맹점의 평균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금액 증빙 서류 ex)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의사항	1.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주사랑상품권 관련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심사 후 최장 5년까지 보관 및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에 소재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주사랑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주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성주사랑 상품권”이란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한 상품권(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 등)으로서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고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무기명 유가증권을 말한다.</p> <p>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p>	<p>제2조(정의) ----- -----.</p> <p>1. “성주사랑 상품권”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p> <p><삭 제></p>

· 「신용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의 상호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의 지역 금고,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의 우체국을 말한다.

3. “판매대행점”이란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 성주사랑 상품권의 충전·보관·판매 및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 8. (생략)

제3조(발행 및 운영) ①·② (생략)

③ 군수는 상품권의 충전·보관·판매 및 환전 업무를 성주군 금고 등 관내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생략)

제5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① (생략)

② 군수는 유흥업소 등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 또는 다음 각

2. -----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

3. ~ 7. (현행 제4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제3조(발행 및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 대행하게 -----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
다.

1. · 2. (생략)

<신설>

제6조(가맹점 등록 및 취소) ① ~ ④ (생략)

⑤ 가맹점의 등록이 1회 취소된
업체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2
회 취소된 업체는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공개하
여야 한다

제8조(판매대행점 준수사항)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판매대행점
은 상품권의 충전·보관·판매
및 환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
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 ⑤ (생략)

제11조(환전 청구 및 환전) ① 가

-----.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공동체
발전과 경제활성화에 적합하
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가맹점 등록 및 취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
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하는 기
간 동안 가맹점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⑥---- 제4항-----

-

제8조(판매대행점 준수사항) ①
제2조제2호-----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환전 청구 및 환전) ① --

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에 청구하고 즉시 환전한다.

② 개별 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천만 원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개별 가맹점의 월 매출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 분기의 매출증빙자료에 따라 매출 금액의 60퍼센트까지 환전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3천만 원으로 한다.

③ (생략)

제12조(할인 및 수수료) ① (생략)

② 개인이 상품권을 할인구매할 경우에는 매월 50만원, 연간 6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할인구매 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액의 1000분의 5범위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제2조제3호에 따른 판매대행

제2조제2호

②

경우 가맹점의 환전한도 초과 신청 및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할인 및 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경우, 월 구매한도는 70만원

③

판매대행점

④ 제2조제2호

<p>점에는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 지급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u>민법</u>」 및 「<u>상법</u>」의 규정에 따른다.</p>	<p>-- 제3항----- ----- -----.</p> <p>제20조(준용) ----- ----- 「<u>지역사랑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u>」 및 「<u>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u>」-----.</p>
---	---

관련법령 발췌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9.>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가맹점의 재등록 제한기간)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재등록 제한기간은 1년으로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1년
2.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6개월
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 가. 법 제1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6개월
 - 나. 법 제10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1년
 - 다.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6개월
 - 라. 법 제10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1년
 - 마. 법 제10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1년

□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p12

□ 지방자치단체장은 **적정한 지역사랑상품권 구매·보유·환전한도 설정**

○ (구매) 1인당 月 70만원 이내 범위에서 지자체별 자율 결정

- 대리구매 방지 등을 위해 日 구매한도를 설정하거나 보다 많은 주민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年 구매한도를 설정할 수도 있음(ex. 月 50만, 年300만)

- 명절 등 한도 상향이 필요한 경우 100만원까지 한시적 허용(행안부 사전협의)

⇒ 대량구매 및 고액결제 억제, 구매여력이 높은 소수 주민에 혜택 집중 방지

성주군 성주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비용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기업경제과 지역경제팀장

성주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3년 11월 일
제출자 : 성 주 군 수

1. 제안이유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24.1.27.까지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미 수립할 경우 공장, 제조업소 입지 불가됨에 따라,
- 나. 관내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같은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제75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 치 : 관내 계획관리지역 일원
- 나. 면 적 : 약101.22km²
- 다. 주요내용

1) 의견청취 내용

- 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 유형구분

구 분		지 정 목 적	지 정 기 준	비 고
유 도 형	주거형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취락 집단화 지역 ⇒ 50호 이상	
	주거유도형	주거환경 보호	취락 집단화 지역경계부 ⇒ 주거형경계 100m	
	산업형	산업 집적화	공장, 창고 집단화 지역 ⇒ 10만m ² 이상	
일 반 형		입지규제 최소화	유도형 외 지역	

- 구역설정

구분	합 계		일 반 형		유 도 형							
					소 계		주거형		주거유도형		산업형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계	309	10,122	207	8,944	102	1,178	48	320	39	359	15	499
성주	34	1,247	14	1,091	20	156	10	56	9	72	1	28
선남	60	2,156	34	1,704	26	452	10	74	10	83	6	295
용암	39	934	33	849	6	85	2	19	2	24	2	42
수륜	29	756	23	701	6	55	5	42	1	13	-	-
가천	11	492	11	492	-	-	-	-	-	-	-	-
금수	19	431	19	431	-	-	-	-	-	-	-	-
대가	25	948	19	893	6	55	3	18	3	37	-	-
벽진	26	851	17	793	9	58	5	25	4	33	-	-
초전	31	1,242	19	1,132	12	110	6	37	5	47	1	26
월향	35	1,065	18	858	17	207	7	49	5	50	5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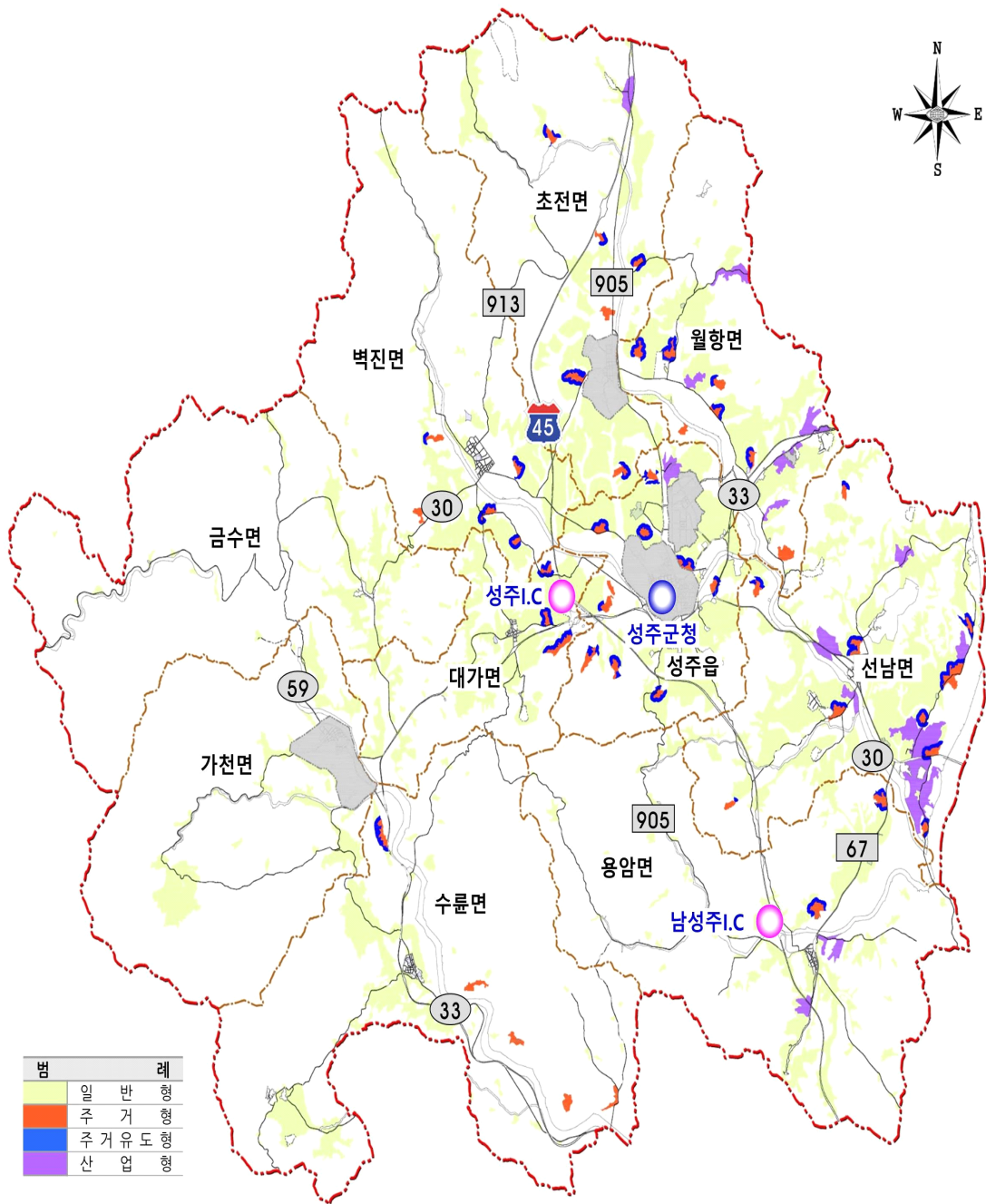
2) 성장관리계획 수립

- 도로 등 기반시설계획
- 건축물 용도, 건폐율 및 용적률 계획
- 건축물 배치·형태·색채·높이 등 계획 등
- 환경관리계획 및 경관계획
- 그 밖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등

3) 추진계획

- '23. 11. :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 관련부서 협의
- '23. 12. : 군계획위원회 심의
- '24. 01. : 결정·고시

3.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총괄도



성주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3년 11월 일
제출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성주군 경관조례 제정(20.12.10)이후, 성주군 경관조례 개정에 관한 심의위원회 개최(2021.03.23.)결과 심의위원들의 주요의견으로 타시군에 비해 경관조례 심의대상 기준이 너무 광범위하고 강화된 조례 제정 되어 잦은 민원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성주군 경관조례」 제25조 및 28조로 규정된 경관심의 및 자문 대상범위에 대하여 조례 개정

2. 주요내용

가. 경관심의대상 조정을 위한 조례 개정

- 1) 사회기반시설 사업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변경(별표 1,2)
- 2) 공공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변경(별표 1,2)
- 3) 일반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변경(별표 1,2)
- 4) 경관심의 제외 조항 추가(제26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경관법」 제4조 및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분석 : 2023. 08.(규제 및 개선사항 없음)

3) 입법예고 : 2023. 10.(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형성하고”를 “형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관 및 가이드라인을 지정 시행하여 군민의”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따른 가이드라인
2. 색채 가이드라인
3.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4. 경관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가이드라인

제2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 할 수 있다.

(단, 경관지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2. 위법건축물을양성화 하는 경우
3. 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기준 등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4. 현상공모에 의한 건축설계작품으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공공건축물

제30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남녀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게 구성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35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조례 제2359호, 2020. 12. 10.>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삭제)

이 조례는 성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및 성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이 수립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0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 ③ (생략)

<신설>

④ ~ ⑧ (생략)

부칙<조례 제2359호, 2020. 12. 10.>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삭제)

아니 할 수 있다. (단, 경관지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2. 위법건축물을양성화 하는 경우
- 3. 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기준 등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 4. 현상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으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공공건축물

제30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은 남녀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게 구성한다.

⑤ ~ ⑨ (현행 제5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부칙
이 조례는 성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및 성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이 수립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성주군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 사회기반시설

구 분	대상 및 규모
도로 및 철도	○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도로사업
하천	○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하천사업

■ 건축물

구 분	대상 및 규모
경관지구	○ 모든 건축물
중점경관 관리구역	○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또는 3층 이상 건축물
공공건축물	○ 연면적 합계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건축물

※ 보상비 제외, 설계변경 포함

[별표 2]

성주군 경관심의 소위원회 대상 및 규모

■ 사회기반시설

구 분	대상 및 규모
공원·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
문화체육 시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6항 라목에 해당되는 체육시설 및 공공문화체육시설
도로· 철도·하천 등 토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
경관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경관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상에 설치되는 경관 조명시설로 총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 - 지역의 상징적인 공공건축물 및 도시구조물 (교량, 지하철도, 육교 등) - 국가, 도 및 군의 지정 문화재 - 도시공원, 광장, 수변공간, 사적지 주변, 랜드마크적인 상징 조형물
설계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심의를 받은 건축물 및 구조물, 시설물이 공사비의 30%이상 변경 시 ○ 설계변경으로 총사업비가 심의대상 기준에 해당되는 시설

※ 보상비 제외, 설계변경 포함

■ 건축물

구 분	대상 및 규모
일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또는 4층 이상(신축, 재축, 개축) 건축물 (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장,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 종류 별표1에 따른 자동차 관련시설, 자원순환관련 시설
공공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합계 1천제곱미터만 건축물 중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건축물
설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치, 외형, 색채, 재질에 관한 설계 변경 시
증축 및 대수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지상 4층이상 건축물 ○ 3층이상 또는 높이9m이상 건축물 중 대수선 외벽면적 50㎡ 이상인 건축물 ○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대상 중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기존 건축물 증축 시, 종전의 규모를 포함하여 위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도시시설물

구 분	대상 및 규모
도 시 부속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등 ○ 트렌치, 맨홀 ○ 제설시설
문 화 관광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안내소 ○ 관광안내도 ○ 안내표지판, 기념표석, 동상
가로녹지 시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수 보호덮개 ○ 가로녹지대, 가로화분대 ○ 분수대
환 경 관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지통 ○ 공중화장실 ○ 대기오염, 교통현황 등 안내 전광판
교통관련 시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스, 택시 등의 승차대 ○ 정류소, 택시 표지판 ○ 자전거 보관대 ○ 블라드, 보호펜스
도 로 점 용 허가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전반, 공중전화 등 지상 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등, 전신주 등 이와 유사한 것 ○ 사설안내표지·아치 등 이와 유사한 것 ○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 판매대, 노점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시계탑, 조명탑 등
도로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가차도 ○ 입체교차 ○ 자전거도로
도로부속 시 설 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육교 ○ 도로의 석축, 옹벽 등 ○ 방음벽 ○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낙석방지망 등

관련법령 발췌

◆ 경관법 제4조 및 제7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관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1. 시·도지사

2.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

3.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군(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같다)의 군수

②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군의 시장·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시장·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행정시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성주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성주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 예상액은 없음

4. 작성자

도시계획과 공공건축팀장

성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3년 11월 일
제출자 : 성 주 군 수

1. 제정이유

제1회 성주군 경관위원회(2021.03.23.) 심의결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및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 등의 의결사항이 있어, 이를 조치 및 반영하여 성주군의 환경, 장소, 시설물 등에 대하여 가이드라인 및 표준디자인을 제시하고, 성주군의 지역성제고 및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및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나. 공공디자인 정의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6조)
- 다.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4조)
- 라. 공공디자인 진흥 심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 15조~제18조)
- 마.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안 제19조~제2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기 타 : 1) 규제심사 : 2023. 08.(규제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분석 : 2023. 08.(개선사항 없음)
 3) 입법예고 : 2023. 10.(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지방
공기업
2. 군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성주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성주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의 군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미리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군의 군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성주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관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성주군 경관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가. 별표1의 공공디자인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디자인 심의

2. 법 제15조에 따라 군이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5. 제22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남녀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게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관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

2.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디자인 총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준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소관업무는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별표 1의 자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단, 자문은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서면자문 사항은 의결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성하며, 3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한다.

④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소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5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①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자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자문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제1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기준을 준수할 것
2. 제22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을 의뢰한 신청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은 해당 공공 시설물 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16조(공공디자인 심의·자문 대상) ① 제7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자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자문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군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 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5. 제22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자문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재난 상황 등으로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3. 조성·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4.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5. 군에서 개발한 표준디자인이 적용된 공공시설물 또는 공공시각 매체인 경우
6. 공공시설물 등의 일부가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경우
7. 사업내용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디자인 협의가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경우
8. 공공건축물의 증축으로 연면적이 1,000㎡미만인 건축물 경우

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자문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자문을 의뢰한 해당부서의 장 및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

제20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공공디자인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군수는 군의 공공시설물, 공공공간, 공공매체 등에 대하여 별표 2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공디자인 심의·자문·협의 대상의 분류는 별표 1과 같으며, 위원회 심의 및 자문대상 외에 군 또는 지방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은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으며, 성인지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3조(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군의 각 부서의 장 또는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시범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공디자인 심의·자문대상(제16조, 제21조 관련)

분 류		대상 시설물
가. 공공 시설물	대중교통시설물	• 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자전거 보관대, 교통량 검지기, 철도 관련 내외부 설치물,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울타리, 블라드, 가로등, 보행유도등, 보안등, 가로등, 가드레일 등
	편의시설물	• 벤치(의자), 피걸러, 쉼터(shelter), 음수대, 휴지통,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재떨이, 공중전화, 정보제공 부스,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
	공급시설물	• 맨홀,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신호등 제어함, 분·배전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무선·휴대전화 기지국, 통신 안테나 등
	녹지시설물	• 가로수 보호대, 가로수 보호덮개 포함, 가로화분대, 분수대, 배수구 덮개 등
	안내시설물	• 각종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임시시설물	• 공사용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나. 공공 공간	공공건축물	• 공공청사, 관광안내소, 공중화장실, 공영주차장, 도서관 등 • 문화·복지시설(체육관, 공연장,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미술관 등)
	다중이용공간	• 공원, 광장, 썸지공원, 운동장, 주차장, 놀이터, 유원지, 묘지, 집회시설 등
다. 공공 매체	정보매체	• 교통 표지판, 이정표, 노선도(버스 등), 지역 및 문화재 안내도, 도로교통 표지 • 디지털 영상매체,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등
	공공조형물	•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포함), 벽화, 수퍼그래픽, 미디어아트, 미술장식품 등
	공공용품	• 각종 집기와 도구, 제복, 표찰, 각종 안전장비, 피난장비, 구호장비, 위생장비, 방역장비, 정보 안내용품, 기념품, 공공공예품 등
	공공이미지	•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 : 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 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 : CI(단체 상징), BI(브랜드 상징), 캐릭터, 고유 문양(엠블럼), 서체, 색채 등
• 심의대상		• 자문대상
가. 공공시설물: 사업비 3억원이상 나. 공공공간: 사업비 10억원이상 - 공공건축물 및 다중이용공간 (설계비 5천만원이상, 연면적 1,000㎡이상) 다. 공공매체: 사업비 3억원이상		가. 공공시설물: 사업비 1억원이상 3억원미만 나. 공공공간: 사업비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 공공건축물 및 다중이용공간 다. 공공매체: 사업비 1억원이상 3억원미만
※ 사업비는 추정금액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비)으로 한다.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전) * 제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된 경우		

[별표 2]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제21조 관련)

1. 대중교통/보행안전/편의/공급/녹지/안내/도로/임시시설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분류	시설물의 종류
대중교통 시설물	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자전거 보관대, 주차 관련 시설물, 지하철 출입구, 환기구(흡·배기구), 교통량 검지기 등
보행안전 시설물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보호 울타리, 가로등, 보행 유도등, 보안등, 공원등, 가드레일 등
편의시설물	벤치(의자), 가로 판매대, 서양식 정자, 음수대, 대기소, 휴지통(재떨이 포함),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공중전화, 정보제공 부스, 관광안내소,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
공급시설물	맨홀,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신호등 제어함, 분·배전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무선·휴대전화 기지국, 통신 안테나 등
녹지시설물	가로수 보호대(가로수 보호덮개 포함), 가로수 화분대, 분수대, 배수구 덮개 등
안내시설물	교통 표지판, 이정표, 지하철 노선도, 도로 및 건물/주차장/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 공원/관광/문화재 안내,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 도로교통 표지, 디지털 영상매체, 지정 벽보판(광고판),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현수막 게시대 등
도로시설물	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 입체교차로,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 터널, 생태통로, 회전형 교차로 등
	보도 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지하보도, 방음벽(시설), 방호 울타리, 중앙 분리대, 낙석 방지망, (높이 2m 이상의)석축 및 옹벽 등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공개·전면공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걷고 싶은 거리, 등산로, 산책로, 문화예술거리 등
임시시설물	공사용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2. 공원, 휴양 공간, 광장 내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분류	시설물의 종류
공 원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휴양공간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 공간, 하천·수변공간, 가로 공간 등
광 장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3.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교통시설, 환경시설의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분류	시설물의 종류
공공청사	공공기관 청사, 주민센터, 공공교육·연수시설, 소방서 등
문화/복지 시 설	박물관, 미술관,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도서관, 의료시설, 체육관·경기장, 공연·전시장, 홍보·기념관, 청소년수련시설, 체육관련시설 등
교통시설	관제센터, 터미널, 요금소, 공영주차장 등
환경시설	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처리시설, 공중화장실 등

4. 안전, 위생, 복지, 편의, 관광용품 등 공공용품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사용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분류	시설물의 종류
안 전	안전장비, 피난장비, 구호장비, 교통차단장비 등
위 생	공중위생장비, 방역장비 등
복 지	장애인용품, 공공 영유아 용품 등
편 의	실내용 가구, 사무용품, 행사용품, 정보 안내용품 등
관광용품	기념품, 공공공예품 등

5.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정체성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해 사용하는 시각이미지가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분류	시설물의 종류
시각이미지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단체 상징(CI), 브랜드 상징(BI), 캐릭터, 고유 문양(엠블럼), 서체 등]

관련법령 발취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의 진흥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5.>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광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광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계획을 수립하려는 시·도지사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1.>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광역계획 또는 시·군·구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변경한다. <개정 2023. 3. 21.>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할 지역의 해당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2023. 8. 8.>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1.>

⑥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5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 3. 21.>

성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성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따른 비용 예상액은 없음

4. 작성자

도시계획과 공공건축팀장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2023. 12. 13.(수) 10:00
성주군의회 본회의장

제277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안 검토보고서

〈 의 안 목 록 〉	〈 제 출 자 〉
○ 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성 주 군 수】
○ 성주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성 주 군 수】



성 주 군 의 회

성주군 성주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 안 자 : 성주군수

2. 제안이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위임 사항 등을 정비하고,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성주사랑상품권의 원활한 유통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목적 법적근거 삽입 및 법령에 따른 관련 용어 정비 (안 제1조 외 다수)
- 가맹점 등록 제한의 포괄적 예외규정 추가 (안 제5조제2항제3호)
- 가맹점 등록 취소에 관한 법령 개정사항 반영 (안 제6조제5항)
- 상품권 할인구매 한도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제2항)
- 상품권 판매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제3항)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기 타 :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기획예산실-9465(2023.8.14.)]
2) 성별영향평가분석 : 해당없음 [가족지원과-37833(2023.8.9.)]
3) 입법예고 : 2023. 9. 1. ~ 9. 21.(20일간)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위임 사항 등을 정비하고,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상품권 정책추진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포괄적인 규정을 추가하고, 상품권 할인구매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증액하고, 연간한도액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 상품권 판매대행 수수료 최대한도를 삭제하는 것은 경상북도 내 타 지자체와 비교 시 우리군이 낮은 상품권 판매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향후 수수료를 증액할 경우 군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명확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성주사랑상품권의 원활한 유통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과정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주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1. 제 안 자 : 성주군수

2.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24.1.27.까지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미 수립할 경우 공장, 제조업소 입지 불가됨에 따라,
- 관내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같은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제75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 치 : 관내 계획관리지역 일원
- 면 적 : 약101.22km²
- 주요내용
 -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 성장관리계획 수립
 - 추진계획

4. 참고사항

가. 의견청취 내용

1)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 유형구분

구 분		지 정 목 적	지 정 기 준	비고
유 도 형	주거형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취락 집단지화 지역 ⇒ 50호 이상	
	주거유도형	주거환경 보호	취락 집단지화 지역경계부 ⇒ 주거형경계 100m	
	산업형	산업 집적화	공장, 창고 집단지화 지역 ⇒ 10만㎡ 이상	
일 반 형		입지규제 최소화	유도형 외 지역	

- 구역설정

구분	합 계		일 반 형		유 도 형							
					소 계		주거형		주거유도형		산업형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계	309	10,122	207	8,944	102	1,178	48	320	39	359	15	499
성주	34	1,247	14	1,091	20	156	10	56	9	72	1	28
선남	60	2,156	34	1,704	26	452	10	74	10	83	6	295
용암	39	934	33	849	6	85	2	19	2	24	2	42
수륜	29	756	23	701	6	55	5	42	1	13	-	-
가천	11	492	11	492	-	-	-	-	-	-	-	-
금수	19	431	19	431	-	-	-	-	-	-	-	-
대가	25	948	19	893	6	55	3	18	3	37	-	-
벽진	26	851	17	793	9	58	5	25	4	33	-	-
초전	31	1,242	19	1,132	12	110	6	37	5	47	1	26
월항	35	1,065	18	858	17	207	7	49	5	50	5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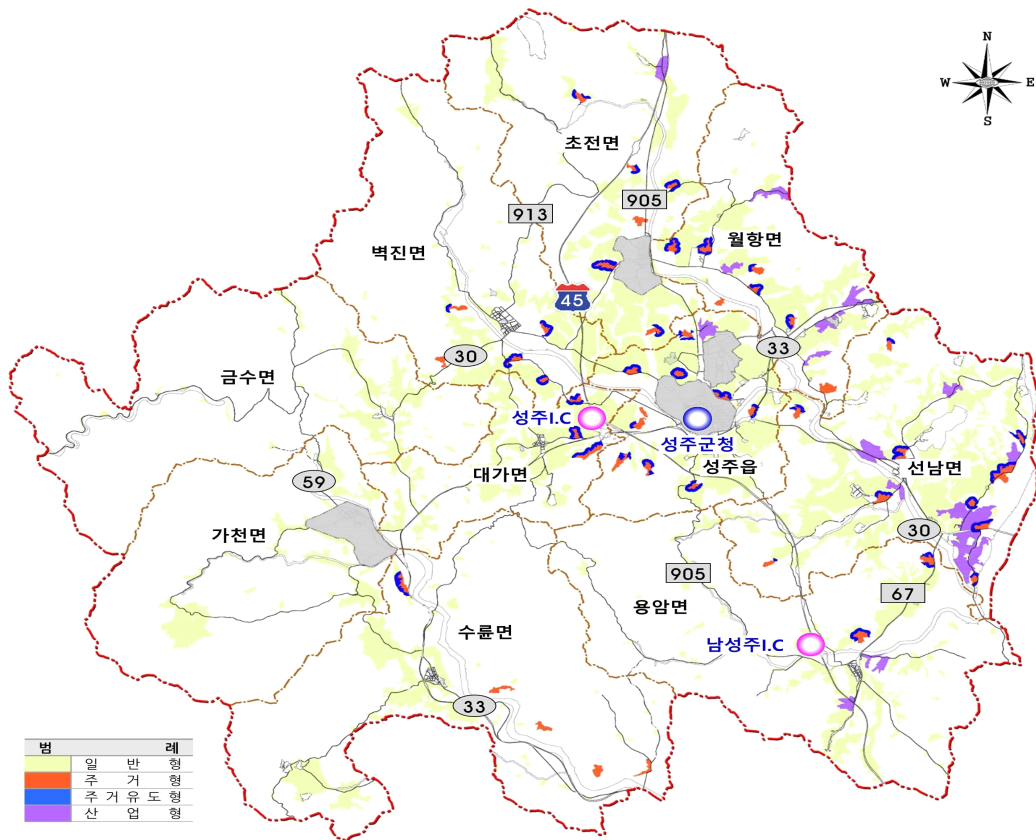
2) 성장관리계획 수립

- 도로 등 기반시설계획
- 건축물 용도, 건폐율 및 용적률 계획
- 건축물 배치·형태·색채·높이 등 계획 등
- 환경관리계획 및 경관계획
- 그 밖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등

3) 추진계획

- '23. 11. :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 관련부서 협의
- '23. 12. : 군계획위원회 심의
- '24. 01. : 결정·고시

5.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총괄도



6.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을 미 수립할 경우 공장·제조업소의 입지가 불가함에, 관내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 유도형으로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취락 집단화 지역 50호 이상 경계인 주거형을,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취락 집단화 지역경계부를 주거형경계 100m까지 주거유도형으로, 산업집적화를 위해 공장, 창고 집단화 지역 10만㎡ 이상인 곳을 산업형으로, 입지규제 최소화를 위해 유도형 외 지역을 일반형으로 지정하며,
- 성장관리계획관리 구역 내 기반 시설인 도로와 건축물이 허용용도와 권장용도에 맞게 건립될 경우 건폐율을 최대 10%, 용적율을 최대 25%까지 완화해주는 내용입니다.
- 관내 계획관리지역 일원에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품질 높은 환경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성주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 안 자 : 성주군수

2. 제안이유

타 시군에 비해 경관조례 심의대상 기준이 너무 광범위하고 강화된 조례 제정 되어 잦은 민원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경관심의대상 조정을 위한 조례 개정
- 사회기반시설 사업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변경(별표 1,2)
- 공공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변경(별표 1,2)
- 일반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변경(별표 1,2)
- 경관심의 제외 조항 추가(제26조제2항)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경관법」 제4조 및 제7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분석 : 2023. 08.(규제 및 개선사항 없음)
3) 입법예고 : 2023. 10.(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타 시군에 비해 심의대상 기준이 너무 광범위하고 세분화된 규제 사항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 사회기반시설인 도로 및 철도의 대상 및 규모는 10억원 이상인 도로사업에서 40억원이 증액된 50억원 이상인 도로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경관심의 대상을 조정하고, 경관심의 제외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 시 어느 한 성별에 치우치지 않고, 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1. 제 안 자 : 성주군수

2. 제안이유

성주군의 환경, 장소, 시설물 등에 대하여 가이드라인 및 표준디자인을 제시하고, 성주군의 지역성제고 및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도시환경을 조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공공디자인 정의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6조)
-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4조)
- 공공디자인 진흥 심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 15조~제18조)
-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안 제19조~제23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기 타 : 1) 규제심사 : 2023. 08.(규제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분석 : 2023. 08.(개선사항 없음)
3) 입법예고 : 2023. 10.(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5. 검토의견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성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을 추진해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수립, 진흥위원회 구성,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공공디자인 결정시 진정한 성주의 이미지와 부합되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공공시설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교체할 것이 우려됨으로 시설물 사용 빈도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성주군의 지역성 제고 및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